

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5일

파 주 시



- 제 목: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
- 법적근거: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(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)제4항
- 공고기간: 2026. 6. 5. ~ 2026. 6. 22. (17일간)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업종	업소명	영업자	소재지	위반사항	처분 내용
1	피부미용업	예쁨	이O신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58, 2층 202호	사업자등록 폐업 (2025. 10. 6.)	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2	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, 화장·분장미용업	오늘내일	김O윤	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19, 1층 (금촌동)	사업자등록 폐업 (2024. 12. 6.)	
3	세탁업	범원세탁소	이O근	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술이홀로 890-1	사업자등록 폐업 (2025. 7. 7.)	
4	세탁업	마마운동화이불빨래방	민O영	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8, 1층 일부 (금촌동)	사업자등록 폐업 (2024. 8. 9.)	
5	이용업	로얄이용원	이O춘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49번길 20 (지하1층)	사업자등록 폐업 (2024. 2. 26.)	

5. 공고사항

-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(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) 처분청(파주시) 또는 재결청(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)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문의사항: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(☎ 031-940-853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